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우편 근거 마련〉

■ 박형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752호)

2026. 7.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심 정 희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박형수의원 등 12인
2. 발 의 일: 2025. 7. 25.
3. 회 부 일: 2025. 7.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부는 원거리 거주 등으로 접견이 어려운 가족, 변호인 등이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된 수용자에게 무료로 전자 서신을 전할 수 있는 ‘교정 인터넷 편지 서비스’를 2023년 10월부터 중단하고 우체국이 제공하는 유료서비스인 ‘e-그린우편’으로 대체시행하고 있음.

위의 조치는 예산 및 교정직공무원의 부족, 일부 접견대행·심부름업체가 ‘교정 인터넷 편지 서비스’를 악용하여 수용자간 만남주선, 수발업체 광고를 하는 등으로 당초 제도 운영취지를 벗어난 데 기인함.

그런데 제도 개편 이후 원거리 거주 가족이나 변호인의 경우 수용자와의 소통 속도가 느려지고, 유료화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음. 나아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접견교통권을 제한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위 제도의 부작용을 차단하되, 기존의 ‘교정 인터넷 편지 서비스’를 통한 서신을 발송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접견교통권 및 변호

인의 조력권 등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수용자가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우편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며, 그 밖에 전자우편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내용임(안 제4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43조의2(전자우편 수수) ① 수용자는 일반 우편역무 외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우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우편 처리에 관하여는 제43조에 따른다. ② 전자우편의 수취횟수, 수취방식, 내용물의 확인방법 및 검열절차, 이용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르면 수용자는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음. 다만, 「형사소송법」 등 법률에 따른 편지 수수금지 및 압수 결정이 있거나, 수용자의 교화 또는 시설의 안전·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서신수수를 금지할 수 있음.¹⁾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편지수수) ① 수용자는 다른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편지의 수수금지 및 압수의 결정이 있는 때
2. 수용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3.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교정시설에 수감된 수용자들에게 변호인, 수용자 가족 등이 무료로 인터넷을 이용해 편지를 전달할 수 있었던 ‘교정 인터넷 편지’ 서비스를 2023년 10월 중단하고,²⁾ 이를 대체한 우체국 제공 유료 서비스인 ‘e-그린우편’³⁾을 시행하여 수용자에게 서신을 전달하고 있음.

기존 ‘교정 인터넷 편지’ 서비스는 민원인들이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내용을 입력하면 교정시설 직원들이 이를 출력하여 수용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는데, 인터넷 편지 수신 비율은 점차 증가하여 2021년 수용자들이 수수한 전체 서신 857만 1,230건 중 49.5%인 4,240,474건이 ‘교정 인터넷 편지’ 서비스를 통해 전달되었음.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일부 수용자들이 지인이나 심부름 대행업체를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같은 교정시설의 수용자 간에 편지를 주고받으려면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소장은 수용자가 주고받는 편지에 법령에 따라 금지된 물품이 들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④ 수용자가 주고받는 편지의 내용은 검열받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편지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는 때

2. ~ 4. (생략)

⑤ 소장은 제3항 또는 제4항 단서에 따라 확인 또는 검열한 결과 수용자의 편지에 법령으로 금지된 물품이 들어 있거나 편지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발신 또는 수신을 금지할 수 있다.

1. 암호·기호 등 이해할 수 없는 특수문자로 작성되어 있는 때

2.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3. ~ 7. (생략)

⑥ 소장이 편지를 발송하거나 내어주는 경우에는 신속히 하여야 한다.

⑦ 소장은 제1항 단서 또는 제5항에 따라 발신 또는 수신이 금지된 편지는 그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해 관리하고, 수용자에게 그 사유를 알린 후 교정시설에 보관한다. 다만, 수용자가 동의하면 폐기할 수 있다.

⑧ 편지발송의 횟수, 편지 내용물의 확인방법 및 편지 내용의 검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교정 인터넷 편지’ 서비스는 2005년 도입되었음.

3)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고객이 작성한 문서를 우편물로 제작하여 받는 사람에게 배달해 주는 서비스임.

통해 음란소설을 연재받거나 불법도박, 주식거래 대행을 맡기는 등 해당 제도를 악용하는 행태를 보여 교정행정에 지장을 불러온 사례도 있었는데, 법무부에 따르면 2022년 가장 많은 인터넷 편지를 수신한 수용자는 1년간 총 3,981건의 서신을 수수하였음.

[연도별 ‘교정 인터넷 편지 서비스’ 수신 현황]

(단위:건)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10.
총 서신 수신	7,099,456	8,277,069	8,571,230	8,940,940	7,755,637
인터넷 수신	2,263,988	3,679,962	4,240,474	4,302,265	3,859,523
인터넷 수신 비율	31.9%	44.5%	49.5%	48.2%	49.8%

자료 : 법무부

이에 법무부는 ‘교정 인터넷 편지’ 서비스의 대안으로 ‘e-그린우편’을 도입한 것인바, ‘e-그린우편’은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고객이 문서를 작성하면 이를 수용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기존과 유사하지만, 소형 봉투 1~6매 흑백 기준 △일반통상 520~690원, △일반등기 2620~2790원(이상 신청한 다음날부터 7일 이내 배달), △익일특급 3620~3790원(12시 이전 신청 시 다음날 배달) 수준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또한 서신수수 기간의 경우, 통상 서신 등록 후 다음날이면 수용자가 받아볼 수 있었던 ‘교정 인터넷 편지’ 서비스와 달리, ‘e-그린우편’의 경우 보통우편을 보내면 수용자가 수수하기까지 4~5일이 소요되며, 익일

특급은 오후 12시 이전에 발송을 신청해야 다음 날 받아볼 수 있음.

이러한 변화로 인해 수용자와 수용자 가족 간의 소통 속도 저하 및 유료화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하고, 의뢰인과 변호인 간 소통이 어려워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접견교통권 제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음.⁴⁾

이에 개정안은 수용자가 일반 우편역무 외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우편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전자우편의 수취 횟수·방식·내용물의 확인방법 및 검열절차·이용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수용자에 대한 신속한 서신전달을 통해 수용자의 서신수수권, 수용자에 대한 변호인의 조력권 등을 향상시키려는 입법취지로서 공감되는 측면이 있음.

다만, 수용자의 서신수수권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징역형 등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서 수용중인 수형자의 통신의 자유⁵⁾의 주체성을 인정하면서도, 통신의 자유를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가의 기준은 기본적으로 입법권자의 입법정책에 맡겨져 있다고 보고 있음.⁶⁾

이를 고려할 때, 수용자에게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우

4) 박강현, 2024. 8. 15., “교도소 ‘인터넷 편지’ 없어진 지 10개월...”변호인만이라도 쓰게 해달라”,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08/15/QCBFJP6BUVGMHOG7PE4F6KYGNE/, 최종검색일: 2025. 9. 8.; 이보라, 2023. 11. 15. “18년 운영하던 ‘인터넷 편지 서비스’ 중단한 법무부...수용자 가족·변호인 민원 빗발”, 경향신문, 최종검색일: 2025. 9. 8.

5) 「대한민국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6) 헌법재판소 1998. 8. 27. 선고 96헌마398 전원재판부

편을 받도록 할 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 관점에서 결정할 사안으로 보이는바, 개정안과 같이 규정할 경우 수용자에게는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우편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고, 국가는 이에 대응하여 수용자에게 전자우편을 전달할 의무가 발생하게 됨.

따라서,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는 ‘교정 인터넷 편지 서비스’가 활용되었던 2019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총 서신 수신 건수 중 인터넷 수신 건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⁷⁾ 최근 5년간 1일 평균 수용인원 또한 꾸준히 증가하는 점에 비추어, 교정시설의 과밀화 경향과 맞물린 교정직 공무원의 행정력 소모 우려에 대한 대응방안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연도별 교정시설 수용인원 현황(2021년~2025년)]

(단위:명)

연도	수용정원	1일 평균 수용인원	수용률(%)
2021	48,980	52,368	106.9%
2022	48,990	51,117	104.3%
2023	49,922	56,577	113.3%
2024	50,250	61,366	122.1%
2025.12.	50,230	65,208	129.8%

자료 : 법무부

참고로 법무부는, 우체국이 제공하는 ‘e-그린우편’은 비용만 지불하면 언제든지 제한 없이 서신을 수수할 수 있는 제도로서, 오히려 기존

7) (2019) 31.9% → (2020) 44.5% → (2021) 49.5% → (2022) 48.2% → (2023.10.) 49.8%

‘교정 인터넷 편지 서비스’와 다르게 봉합된 채 전달되므로 서신 내용의 비밀이 보장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나 접견교통권 보장이 가능하며, 서신수수의 방법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도⁸⁾를 통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접견교통권이 보장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기존의 무료인 ‘교정 인터넷 편지 서비스’는 심부름 대행업체가 음란소설 연재, 스포츠토토·주식거래 유도, 수용자 간 펜팔 주선·부정연락 대행, 심부름 대행업체의 서비스 종류·비용 홍보 활용 등에 악용하는 폐해가 커 폐지한 제도임을 고려하여,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053

-
- 8)* **변호인 당일접견**: 기존에는 접견 희망일 10일 전 예약을 했어야 하나 영장실질심사 등 그 밖에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당일에도 예약이 가능
- * **변호인 공휴일접견**: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한 변호인 접견 가능
- * **변호인 화상접견**: 민원인이 인근 교정시설의 화상접견실에서 타 교정시설에 있는 수용자와 화상으로 접견하는 것으로, 변호인의 경우 접견시간을 기존 1시간에 30분으로 조정하여 변호인 화상접견 기회 확대
- * **변호인 스마트접견**: 민원인의 스마트폰, PC를 이용하여 화상으로 수용자와 민원인이 접견하는 것으로, 변호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입 검토 중